

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2974번
- 제 안 자 : 박성연 의원(찬성자 23명)
- 제 안 일 : 2025년 8월 11일
- 회 부 일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의 역할 재정립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.
- 기존 「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, 최근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‘생애재설계’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, 중장년층의 경력설계, 건강증진,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확대·보완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명칭을 “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(안 제명).

- “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”을 “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”으로 명시함(안 제1조).
- 각 조항에 “인생이모작”이라는 용어를 “생애재설계”로 일괄 변경함.
-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”을 “중장년 생애재설계”로 변경하고, 맞춤형 취업훈련, 커뮤니티 활동 등 신규 지원사업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후준비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‘본 개정안’)은 변화된 정책 흐름과 생애주기 관점에서 ‘생애재설계’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, 조례의 명칭(제명)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,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을 확대·보완하고자 발의하였음.

※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

· 조례의 제명 및 목적, 정의 변경 등

- ▶ 조례 제명 (안 제명): “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”
→ “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”
- ▶ 목적 내용 (안 제1조)
- ▶ 정의 규정 (안 제2조)
- ▶ 지원사업 삭제 및 신설 (안 제4조)

· 용어 정비 등

- ▶ 용어 일괄변경 (안 제2조제2호·제3호, 안 제3조, 안 제4조제1항·제2항, 안 제6조 조제목·제1항, 안 제6조의2 조제목·각 호외, 안 제6조의3제1항·제2항, 안 제6조의4제1항, 안 제6조의5, 안 제9조 각 호외·제3호)
 - “인생이모작” → “생애재설계”
 - “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” → “중장년 생애재설계”

- 본 개정안은 본 조례의 “인생이모작” 대신 ‘생애재설계’ 개념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명(안 제명), 목적 내용(안 제1조), 정의 규정(안 제2조) 변경 및 지원사업 삭제·신설(안 제4조), 용어 일괄변경 등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,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 등을 변경(인생이모작 → 생애재설계)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(타당성, 필요성 등 검토)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현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<u>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“<u>인생이모작</u>”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 3. “<u>인생이모작 지원시설</u>”이란 중장년층의 <u>인생이모작</u>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장년층의 <u>인생이모작</u>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<u>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</u>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<u>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</u>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<u>필요한</u> 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<u>생애재설계</u>”란 ----- ----- <u>와 안정적</u>----- -----. 3. -----<u>생애재설계</u> ----- - <u>생애재설계를</u> ----- -----. 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<u>생애재설계</u> ----- ----- --. 제4조(지원사업) ① ----- <u>중장년 생애재설계</u> ----- -----.

1. (생략)

2.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

3. (생략)

4. 건강증진 지원사업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5. (생략)

6. (생략)

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6조(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의2(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,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1. 2.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4. 경력설계 상담 --

5.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사업

6.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

7.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

8.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

3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9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 생애재설계 -----

-----.

제6조(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-----
----- 생애재설계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) -----
----- 생애재설계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,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제6조의5(사용료의 반환)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둔다.

1.·2. (생략)

3.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

4. (생략)

제6조의3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
-- 생애재설계 -----

-----.

② -----
생애재설계 -----

-----.

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-----

----- 생애
재설계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5(사용료의 반환) -----

-- 생애재설계 -----

-----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

--- 생애재설계 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생애재설계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- 서울시는 2015년 장년층(50세 이상 65세 미만)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·시행(2015.4.2.)하였으나,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장년층(40세 이상 65세 미만)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제명(「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)으로 개정(2024.7.15.)하였음.
- 본 조례에서 “인생이모작”의 정의는 조례 제정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, ‘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’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
※ 본 조례의 제명 및 정의 연혁

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[시행 2015. 4. 2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839호, 2015. 4. 2., 제정]	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[시행 2024. 7. 1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357호, 2024. 7. 15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장년층”(長年層)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2. “인생이모작”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 3. “인생이모작 지원시설”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중장년층”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2. “인생이모작”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 3. “인생이모작 지원시설”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
- 본 개정안의 핵심은 “인생이모작” 대신 ‘생애재설계’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, 개정안은 “생애재설계”를 ‘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’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- “인생이모작” 정의와 비교할 때, 일부분만 수정(‘성공적인 노후생활’ → ‘안정적인 노후생활’)하고 있는데, 기존의 지원 목적(제2의 인생설계, 사회참여 지원 등)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(복리증진, 실질적 사회참여 지원 등)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짐.

※ 본 조례와 본 개정안의 주요 정의 비교¹⁾

- “인생이모작”: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“생애재설계”: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○ 관계 법령으로는 2015년 제정된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이 있으나, “생애재설계”를 정의 또는 규정한 법령은 없는 상황으로, 타 지방자치단체(14개) 조례의 제명 및 정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- 다만, “생애재설계”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, 대체로 본 조례의 “인생이모작” 정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며, 본 개정안의 정의(“안정적인 노후생활”)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3개(광주광역시, 남양주시, 양주시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※ 조례의 제명에 “인생이모작”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7개임. (서울시 포함)

〈 ‘생애재설계’ 관련 자치법규 현황 〉

연번	자치법규명	주요 사항	비고
1	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<u>성공적인 노후생활</u> 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9.6.14.) 이후 동일
2	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<u>안정적인 노후생활</u> 영위를 위하여 하는 직업능력 향상 활동 및 사회 활동 등을 말한다.	제정('17.7.1.) 이후 동일
3	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<u>성공적인 노후생활</u> 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6.6.8.) 이후 동일

1) 표준국어대사전(국립국어원) 검색 결과, “인생이모작”(인생+이모작 합성어)과 “생애재설계”(생애+재+설계 합성어)는 사전적 용어는 아님. 다만, 개별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, “인생이모작”은 ‘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+같은 땅에서 1년에 종류가 다른 농작물을 두 번 심어 거둠’으로, “생애재설계”는 ‘살아 있는 한평생의 기간+다시 하는(두번째)+계획을 세움’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4	전북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7.4.14.) 이후 동일
5	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,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7.11.24.) 이후 동일
6	남양주시 중·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9.5.16.) 이후 동일
7	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9.10.18.) 이후 동일
8	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,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9.2.15.) 이후 동일
9	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24.6.12.) 이후 동일
10	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,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22.3.18.) 이후 동일
11	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,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6.12.30.) 이후 동일
12	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25.2.24.) 이후 동일
13	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6.10.12.) 이후 동일
14	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	- 제명 및 정의에서 “생애재설계” 규정 - 생애재설계: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	제정('17.7.14.) 이후 동일

- “인생이모작”과 “생애재설계” 용어는 실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, 의미나 목적 등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우나, 엄밀하게 살펴보면 “인생이모작”은 특정 시점의 ‘전환’이 강조되는 개념(encore carrier)이며, “생애재설계”는 중장년(40세~65세미만)과 시니어(65세 이상)로 구분되는 은퇴기와 노후기 등의 단계별, 지속적인 ‘수정·개선’이 강조되는 개념이므로, 본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방향성에 부합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(평생교육과)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(원안가결)과 함께 ‘생애재설계’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출하였음.

〈평생교육국 의견 회신〉
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
	○ 중장년의 포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‘생애재설계’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결론적으로, 본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역할 재정립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례의 명칭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(복지증진, 실질적 사회참여 지원 등)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함께,
 - 서울시의 경우 본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(“인생이모작”)을 줄곧 유지해 왔다는 점,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생애재설계”의 정의가 “인생이모작”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핵심 개념 등을 변경(인생이모작 → 생애재설계)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추가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 부칙 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(기존 조례의 제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관한 사항)이 누락되었고, 용어의 일괄변경(“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” → “중장년 생애재설계”) 중 미반영 조항(안 제3조)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〈전문위원실 수정의견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</u>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<u>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</u> ----- -----.	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중장년 생애재설계</u>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부칙	부칙	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</u> <u>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u>제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“「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</u>

※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정비 부분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중장년층”이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 법 조 사 관	최 현 중
----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